

미국 메리랜드주 학교도서관 미디어 프로그램 고찰

함 명 식

〈공항공등학교 사서교사〉

I. 서 언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 교육 과정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교육 과정의 개정과 대입 제도의 개선이 그 일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 교육의 목표 변화에 따라 학교도서관의 목표와 역할도 변화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시대적 전환기에 놓여 있다.

그러하여 이 글에서는 학교도서관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이론 탐구 방향과 학교도서관과 사서 교사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미국 주 교육청의 교육 정책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주 교육청의 학교도서관 미디어 센터에 관한 교육 행정은 학교도서관의 방향과 현실을 종합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그들의 필연적인 위상 변화 요인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교육은 주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학교도서관 미디어 센터에 관한 각 주의 교육 정책과 행정은 전반적으로 동일한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 도서관계가 아닌 주 교육청의 정책 방향을 살펴 보는 것은 교육계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 사서 교사의 역할과 위상 정립에 중요한 의미

가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미국의 여러 주중 메리랜드 주교육청의 학교도서관 미디어 프로그램 기준, 전문직 자격 기준¹⁾, 자료 및 전문직 배치 현황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II. 미디어 프로그램 기준

1984년 5월 23일 주 교육위원회는 학교도서관 미디어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Statement of Purpose for School Library Media Programs in Maryland”라는 선언서를 채택하였다. 이 선언서에 의거 메리랜드주 “Standards for School Library Media Programs in Maryland”가 1986년에 제정되었으며 기준의 시행 책임은 지역별 學區에 있다. 미디어 프로그램 기준은 다음과 같다.²⁾

1.0 지표

학교도서관 미디어 프로그램은 각급 학교 교육지표와 학구 및 주교육청의 도서관 매체 지표에 부합하도록 그 지표를 천명한다.

1.1 학교도서관 미디어 프로그램을 정의한다.

1.2 학교도서관 미디어 프로그램은 學區의 교육 목표를 지원하고 학생과 교사에 대한 봉사를 규정한다.

1) 도서관 매체 전문직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사서교사를 의미한다 미국은 주를 중심으로 교육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용어상 Media Specialist(Generalist), Library M.S(g), Education M.S(g), School M.S(g), School Librarian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데 Media, Specialist, Generalist 등의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미국 도서관계에서 학교 도서관에 근무하는 전문직만이 School Librarian 또는 Teacher-Librarian 이라는 종래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서 교사”라는 명칭에서 “사서”라는 용어의 적합성 등에 관하여는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Standards for SLMP in Maryland. MSDE, 1987

1.3 각급 학교에서 도서관 매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다.

1.4 학교도서관 미디어 프로그램은 敎授過程의 필수 영역임을 명시한다.

1.5 모든 학습자에게 知的 자유의 촉진을 고무한다.

1.6 學區의 미디어 프로그램 계획, 개발, 분석, 관리 및 평가에 대한 감독·지원 책임 및 학구와 각급 학교의 봉사 내용을 명시한다.

2.0 목표

학교도서관 미디어 프로그램은 학교도서관 미디어 지표에 부합하는 목표를 천명한다.

2.1 주와 학구의 교육 목표를 지원한다.

2.2 특정 敎授 프로그램의 지원을 명시한다.

2.3 학생에 대한 직·간접 교육 내용을 명시한다.

2.4 지식·정보에 관한 신속한 검색·제공을 명시한다.

2.5 모든 네트워크의 이용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다.

2.6 평생 독서를 촉진한다.

2.7 도서관 매체 이용 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학습 독립성을 촉진한다.

2.8 도서관 매체 지표와 목표의 주기적인 평가를 명시한다.

2.9 전문직과 보조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다.

2.10 교사 도서관 매체 연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다.

2.11 도서관 매체 전문직, 교사, 그리고 기타 개인·기관과의 협의·기획을 명시한다.

2.12 자료와 機器의 선택·이용·평가를 명시한다.

2.13 효과적인 목록 작성, 도서 대장 기록 및 검색을 명시한다.

3.0 교육

3.1 직접 교육

도서관 매체 전문직은 자료의 검색, 선정, 이용, 평가 및 제작 지식에 관하여 학생을 교육한다. 이러한 지식의 교육은 전체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통합해서 이루어질 때 효과적이다. 지식 범위는 다음을 포

함한다.

3.11 자료와 機器의 검색과 이용

3.12 자료의 분석, 평가 및 선택

3.13 학습, 연구, 참고 및 비판적 사고능력 함양·응용

3.14 다양한 매체의 내용 파악

3.15 정보의 검색·관리

3.16 독서 능력 개발

3.17 문학 감상

3.18 도서·매체의 평가

3.19 도서·비도서 자료의 개발

3.2 교수-학습 지원

도서관 매체 전문직은 교수-학습을 지원·봉사한다.

3.21 커리큘럼의 개발·이행·평가를 학구 담당자와 협의·계획한다.

3.22 커리큘럼의 개발·이행·평가를 교과 교사와 협의·계획한다.

3.23 교사 도서관 매체 연수를 이행한다.

3.24 교육 자료를 수집·제공한다.

4.0 직원

학구의 규모와 도서관 매체 봉사 범위에 따라 학구 도서관 매체課와 학교 도서관 매체 전문직의 수가 결정된다. 그러나 특정 자료와 봉사는 학구의 학교수에 상관없이 도서관 매체 행정 전문직의 감독하에 학구도서관 미디어 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직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소규모 학구에서 직원과 업무중 일부는 다른 학구·기관과 공동 협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1 각급 학교에 도서관 매체 전문직을 확보하는 정책을 수립한다(별표1: 전문직 배치 기준 참조)

4.2 도서관 매체 전문직이 敎授過程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무·기술보조직을 둔다(별표1 참조)

4.3 학구의 미디어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유자격 도서관 매체 장학관(사)을 두고 학구의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조정·통합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4.4 도서관 매체 전문직의 임용시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다.

4.5 교육 능력과 도서관 매체 관리에 관한 학교도서관 매체 전문직의 평가를 위해 미디어 프로그램의 근무 평정 절차를 이용한다.

4.6 도서관 매체 전문직은 도서관 매체에 관한 연수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5.0 자료

5.1 학구 교육 위원회의 정책에 부합하도록 선정·평가된 다양한 형태의 문헌자료와 매체 자료를 확보한다(별표2:자료 기준 참조)

5.2 각급 학교 자료와 교수 기기는 학구 지침과 관리 절차에 따라 각급 학교 도서관 미디어 센터에서 관리·조직한다.

5.3 학생수, 학교급별, 교육과정, 자료와 기기에 따라 연간 예산을 지원한다.

5.4 이러한 자료는 학교의 교육 과정을 지원한다.

5.5 이러한 자료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신속한 이용을 보장한다.

5.6 특정 요구에 대한 참고 봉사와 지원 규정을 둔다.

5.7 학구의 정책과 부합하도록 선정·평가된 적절한 기기의 이용을 보장한다.

5.8 학생과 교사의 교수 자료와 기기이용을 촉진한다.

5.9 다양한 형태의 교육 매체 제작을 이행한다.

5.10 학생, 교사, 학부모 및 지역 사회의 학교도서관 미디어 프로그램 이용을 촉진한다.

5.11 이용자와 교육 과정의 필요에 따라 자료를 주기적으로 평가·수정한다.

6.0 시설

학구는 도서관 매체 봉사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적합한 공간을 지정해야 한다(별표3:시설 기준 참조)

6.1 필수 공간

6.11 대출·목록·색인·게시실

6.12 독서·시청·브라우저·연구실(책상, 의자, 캐럴, 안락의자, 서가, 참고자료, 컴퓨터 포함)

6.13 강의실(수업실)

6.14 직원 사무실·매체 기획실

6.15 매체 정리실

6.16 기자재·자료·비품실

6.17 교육 통신실(시청각 자료, 컴퓨터, 제작 자료 포함)

별표 1 도서관 매체 전문직/사무·기술직 배치 기준

| 학 생 수 | 국 민 학 교 | | | 중·고등학교 | | |
|-------------|---------|-----|--------|--------|-----|--------|
| | 계 | 전문직 | 사무·보조직 | 계 | 전문직 | 사무·보조직 |
| 200 미만 | 1 | 0.5 | 0.5 | 1 | 0.5 | 0.5 |
| 200~799 | 2 | 1.0 | 1.0 | 2 | 1.0 | 1.0 |
| 800~1199 | 3 | 1.5 | 1.5 | 3 | 1.5 | 1.5 |
| 1200+(국민학교) | 4 | 2.0 | 2.0 | | | |
| 1200~1599 | | | | 4 | 2.0 | 2.0 |
| 1600~1999 | | | | 5 | 2.5 | 2.5 |
| 2000 이상 | | | | 6 | 3.0 | 3.0 |

별표2. 시설기준

(단위 : m²)

| 공 간 | 학 생 수 | | |
|--|-------|---------|----------|
| | 600미만 | 600-900 | 900-1200 |
| 1. 대출·목록·색인·게시실 | 46 | 56 | 70 |
| 2. 독서·시청·브라우저·연구실(의자, 책상, 캐럴, 서가, 잡지가, 참고자료, 컴퓨터 포함) | 279 | 418 | 557 |
| 3. 강의실(수업실) | 65 | 93 | 139 |
| 4. 사무실·매체 기획실 | 19 | 23 | 29 |
| 5. 매체 정리실 | 29 | 37 | 56 |
| 6. 기자재·자료·비품실 | 33 | 60 | 74 |
| 7. 교육통신실(시청각자료, 컴퓨터, 제작자료 포함) | 56 | 65 | 107 |
| 계 | 525 | 753 | 1,031 |

*학생수 1,200명 이상인 경우 "2항"은 학생 1인당 0.464m²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3. 자료/기기 기준(문헌·매체 자료)

| | | |
|-----------------|------------------------------------|--|
| 1. 기본자료 원칙 | | 1. 각 급 학교는 다양한 형태의 기본 자료(문헌·매체)를 확보해야 한다. 2. 기본 자료 확보시 학생·교사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3. 신설 학교의 기본 자료 확보는 학교 설립의 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기본 자료의 재원은 학교 설립 재원에 포함되거나 별도의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
| 2. 기본자료 기준 | 국민학교 | 학생수 600명 이상의 경우 학생 1인당 20권 이상. 다만, 기본자료 12,000권 이상이어야 한다. |
| | 중 학교 | 학생수 600명 이상의 경우 학생 1인당 25권 이상. 다만, 기본자료 15,000권 이상이어야 한다. |
| | 고등학교 | 학생수 600명 이상의 경우 학생 1인당 30권 이상. 다만, 기본자료 18,000권 이상이어야 한다. |
| 3. 소 규모 학교 특별규정 | 국민학교 | 학생수 200명 미만의 경우 학생 1인당 20권 이상. 다만, 기본자료 1,000권 이상이어야 한다. |
| | 중 학교 | 학생수 200명 미만의 경우 학생 1인당 25권 이상. 다만, 기본자료 1,250권 이상이어야 한다. |
| | 고등학교 | 학생수 200명 미만의 경우 학생 1인당 30권 이상. 다만, 기본자료 1,500권 이상이어야 한다. |
| | 해당 학교는 학구의 도서관 매체 자료 활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4. 기 기 | | 오디오 테잎, 카메라와 부속물, 컴퓨터와 주변기기, 복사기, 복사카메라 기기, 암실기기, 종이절삭기, 이어폰 및 시청각 기기, 기기운반대, 필립스트립, 투광조명 등, 랙턴 그래픽·레터링 기기, 마이크로폼과 복사기, 마이크로폰, 영사기, 오페크 프로젝터 오버헤드 프로젝터, 스크린, 라디오, 음향기기, 슬라이드와 프로젝터, 타자기, 텔레비전과 방송시스템, 비디오 카메라와 편집기 |
| 5. 학구의 역할 | | 학구의 도서관 매체課는 각급 학교에서 확보할 수 없는 자료와 기기를 주 교육청과 기타 기관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

6.2 학생과 교사의 특정 목적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6.3 미디어 프로그램과 기타 교수-학습 분야의 변화를 수용하고 교수 기기의 발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6.4 교육 매체 기기, 비품 및 자료의 적절한 이용·보호·안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6.5 학습 자료가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배열·관리되어야 한다.

6.6 이용자에게 심미적 호소와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배열·관리되어야 한다.

7.0 프로그램 평가

학구와 각급 학교는 미디어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7.1 미디어 프로그램 기준에 근거한 학구 평가 양식을 이용한다.

7.2 학교교육 목표와 도서관 매체 목표의 달성도에 중점을 둔다.

7.3 이러한 기능은 연간 실시되는 자료 수집과 평가 활동으로서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주기적인 과정이다.

7.4 프로그램 수정, 예산 편성, 직원 임용, 자료 학층 및 교육 행정가, 이용자, 그리고 지역 사회 등 다양한 조직과의 교류를 위한 계획 수립시 평가 결과를 이용한다.

III. 전문직 자격 기준

학교도서관 미디어 프로그램에 근무하는 교육 매체 전문직 자격 기준은 메리랜드주 교육 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이는 기존의 서서나 시청각 담당자와는 역할과 위상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³⁾. 미국의 사서 교사에 대한 이러한 자격 기준과 위상 재정립은 1972년에 주교육 위원회의 규정에 의해 비롯되어 그 후 교육 매체 전문직에 필수적인 커리큘럼과 자격 기준을 1981년과 1992년에 개정, 시행하고 있다.⁴⁾

1. Educational Media Associate(사서교사 2급)

도서관 매체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구비한 자로서 주로 미디어 프로그램의 운영 실무를 담당한다. 대규모 미디어 센터의 실무자, 학구 미디어 센터의 운영 위원, 또는 소규모 학교에서 미디어 센터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1) 자격 요건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다음의 교육 매체에 관하여 18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① 교육체제 분야(3~6학점)
 - ㉠ 교수 체제(즉, 커리큘럼 개발·교수 전략)의 이론, 원리, 방법
 - ㉡ 이용자(즉,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특성)에 관한 지식
- ② 교육 매체/문헌 정보 분야(12~15학점)

* ㉢ 학교 미디어 프로그램의 운영

㉣ 자료 조직(분류·목록)

* ㉤ 교육 매체 설계·제작

* ㉥ 교육 매체 선택·이용·평가

㉦ 독서 교육·시청각 교육

㉧ 초중고생의 독서 자료와 교육 정보(참고 봉사·서지 포함)

*는 주 교육청의 중점 분야

2) 자격 갱신

자격 갱신 기간 3년마다 30 인정 워크숍, 교육 기관 연수, 대학 또는 대학원의 강좌를 통하여 6학점을 이수, 12년간 24학점을 이수한다.

2. Educational Media Specialist(사서교사 1급)

미디어 프로그램의 특정 전문 분야에 관한 지식과 능력을 구비한 자로서 대규모 미디어 센터의 전문 분야를 담당하거나 학구 센터의 운영 위원이 될 수 있다. 행정 능력과 도서관 매체 행정에 관한 학점 이수를 통해 미디어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1) 자격 요건

석사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프로그램의 3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15학점은 동일 교육 기관에서 이수해야 한다. 구비 요건은 교육 매체 관련 분야 즉, 시청각 통신, CAI, 도서관학, 프로그램 학습, 교육 텔레비전 등에 관한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구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교육체제 분야(6~9학점)
 - ㉠ 교수 체제(즉, 커리큘럼 개발·교수 전략)의 이론·원리·방법
 - ㉡ 교육의 조직과 그에 대한 미디어 프로그램의 적용
 - ㉢ 이용자(즉,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특성) 지식과 이용자 정보 요구의 분석
- ② 실습 또는 2년간의 교직 경력 또는 2년간의 도서관 매체 실무 경력
- ③ 석사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프로그램의 일부

3) Certification Requirement for Educational Media Personnel; Introduction. MSDE, 1992

4) Certification Requirement for Educational Media Personel. MSDE, 1992

로서 대학원 관련 학문 또는 교육 매체 과목의 추가 이수시 ②항을 대신할 수 있다. 단, 자격 요건상의 구비 능력이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기관의 학점으로 이수·인정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3. Educational Media Generalist(사서교사 1급)

미디어 프로그램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프로그램의 개선 및 행정 능력을 구비한 자로서 미디어 센터의 책임자, 대규모 미디어 센터 또는 학구 센터의 운영 위원이 된다. 도서관 매체를 전공한 석사 학위 또는 동등 학위에서 도서관 매체에 관한 3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단, 15학점은 동일 기관에서 이수해야 한다. 도서관 매체에 관한 구비 요건은 다음을 포함한다.

① 교육체제 분야(6~9학점)

㉠ 교수 체제(즉, 커리큘럼 개발·교수 전략)의 이론·원리·방법

㉡ 교육의 조직과 그에 대한 미디어 프로그램의 적용

㉢ 이용자(즉,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특성) 지식과 이용자 정보 요구의 분석

② 교육 매체/문헌 정보 분야(21~24학점)

㉣ 초중고생의 독서 자료와 교육 정보(참고 봉사, 서지 포함)

* ㉤ 교육 커뮤니케이션의 원리와 정보의 보급·이용

* ㉥ 미디어 프로그램의 행정·관리

㉦ 자료 조직(즉, 분류, 목록)

* ㉧ 교육 매체 설계·제작

* ㉨ 교육 매체 선택·이용·평가

㉩ 독서 교육, 시청각 교육

㉪ 자동화, 정보 검색

*는 州 교육청의 중점 분야

③ 실습 또는 2년간의 교직 경력 또는 2년간의 도서관 매체 실무 경력

④ 석사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대학원 관련 학문 또는 교육 매체 과목의 추가 이수시 ③항을 대신할 수 있다. 단, 자격 요건상의 구비 능력이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기관의 학점으로 이수·인정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4. Educational Media Administrator(학구·주 도서관 매체 장학관(사), 학교 사서 주임)

학구 또는 학교에 있어서 미디어 프로그램의 행정·감독 책임자로서 교육감에 의해 임명되고 정책 개발, 프로그램 운영, 예산, 업무 분장을 담당한다.

① 자격 요건

㉠ 국가 인정 기관의 도서관 매체를 전공한 석사 학위

㉡ 석사 학위 학점이외에 주 교육청이 인정한 15학점의 대학원 학점 또는 이에 상응한 학점의 추가 이수. 단, 최소 6학점은 행정·장학 분야이고 나머지는 관리, 기획, 연구, 인간 관계 등이다.

㉢ 3년간의 학교 미디어 프로그램 경력 단, 학구 교육장의 추천시 2년간의 관련 경력은 2년간의 학교 미디어 프로그램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 Educational Media Generalist(사서 교사 1급) 자격 소지자

IV. 자료 및 전문직·보조직 현황

메릴랜드주 학구별 자료와 전문직·보조직 배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⁵⁾

5) Facts About Maryland's School Library Media Programs 1991, MSDE(DLDS)

1. 자료 현황(문헌·매체자료, 1990~1991)

| 학 구 | 학교 | 미디어센터 | 학생 | 자료량 | 주기준 | 학생 1인당 | 확보율(%) |
|-----------------|-------|-------|---------|------------|------------|--------|--------|
| Allegany | 24 | 24 | 11108 | 245738 | 361555 | 22.1 | 68 |
| Anne Arundel | 109 | 109 | 64701 | 1144980 | 1776820 | 17.6 | 65 |
| Baltimore | 146 | 146 | 87795 | 1392940 | 2405340 | 15.8 | 58 |
| Calvert | 13 | 12 | 10388 | 151226 | 246115 | 14.5 | 62 |
| Caroline | 9 | 9 | 4790 | 91439 | 147590 | 19.0 | 62 |
| Cecil | 25 | 25 | 12858 | 189506 | 380875 | 14.7 | 50 |
| Charles | 27 | 27 | 18679 | 312647 | 473245 | 16.7 | 67 |
| Dorchester | 12 | 12 | 4892 | 114630 | 148190 | 23.4 | 78 |
| Frederick | 44 | 43 | 26848 | 436635 | 704945 | 16.2 | 62 |
| Garrett | 16 | 16 | 5117 | 99383 | 153680 | 19.4 | 65 |
| Harford | 43 | 43 | 31497 | 714895 | 794495 | 22.6 | 90 |
| Howard | 50 | 50 | 29949 | 595463 | 777525 | 19.8 | 77 |
| Kent | 8 | 8 | 2591 | 79888 | 93505 | 30.8 | 86 |
| Montgomery | 172 | 171 | 102232 | 1771082 | 2778545 | 17.3 | 64 |
| Prince George's | 171 | 169 | 106961 | 1678749 | 2877995 | 15.6 | 59 |
| Queen Anne's | 9 | 9 | 5368 | 104601 | 157260 | 19.4 | 67 |
| St. Mary's | 27 | 27 | 12535 | 323097 | 355290 | 25.7 | 91 |
| Somerset | 13 | 10 | 3607 | 52236 | 117325 | 14.4 | 45 |
| Talbot | 9 | 9 | 4054 | 91856 | 125160 | 22.6 | 74 |
| Washington | 41 | 39 | 17686 | 303088 | 554260 | 17.1 | 55 |
| Wicomico | 22 | 21 | 12687 | 248303 | 344810 | 19.5 | 73 |
| Worcester | 13 | 11 | 5703 | 128092 | 169660 | 22.4 | 76 |
| Baltimore city | 153 | 149 | 98625 | 1440096 | 2573655 | 14.6 | 56 |
| 주총계 | 1,186 | 1,169 | 702,456 | 12,111,628 | 19,061,920 | 17.2 | 64 |

2. 전문직·보조직 현황(1990~1991)

| 학 구 | 학교수 | 학 교 | | | | | | 학 구 | | |
|----------------|------|------|-----|-------------------|-------------------|-------------------|-------------------|--------------------------|--------------------------|-----|
| | | 전문직 | 보조직 | 전문직 주기준 확보교 | 보조직 주기준 확보교 | 기 준 미확보 전문직 | 기 준 미확보 보조직 | 도서관 매 체 유자격 전문직 | 도서관 매 체 무자격 전문직 | 보조직 |
| Allegany | 24 | 23 | 0 | 21 | 0 | 1 | 24 | 0 | 0.4 | 3 |
| Anne Arundel | 109 | 98 | 79 | 63 | 30 | 26 | 57 | 4 | 9 | 16 |
| Baltimore | 146 | 159 | 27 | 129 | 5 | 10 | 137 | 5 | 5.5 | 25 |
| Calvert | 13 | 12 | 12 | 7 | 7 | 4 | 4 | 0 | 1 | 0 |
| Caroline | 9 | 9 | 1 | 7 | 0 | 1 | 9 | 0 | 0.2 | 0 |
| Carroll | 30 | 28 | 8 | 11 | 1 | 9 | 29 | 1 | 0 | 2 |
| Cecil | 25 | 19 | 17 | 8 | 6 | 7 | 10 | 1 | 0 | 0 |
| Charles | 27 | 29 | 23 | 22 | 13 | 3 | 9 | 1 | 0 | 0 |
| Dorchester | 12 | 10 | 7 | 9 | 6 | 3 | 5 | 0 | 0.2 | 0 |
| Frederick | 44 | 41 | 21 | 33 | 14 | 8 | 28 | 1 | 0 | 7 |
| Garrett | 16 | 2 | 11 | 1 | 13 | 11 | 2 | 1 | 0 | 1 |
| Harford | 43 | 42 | 28 | 25 | 10 | 10 | 26 | 1 | 0 | 4 |
| Howard | 50 | 57 | 35 | 47 | 26 | 2 | 18 | 3 | 0 | 6 |
| Kent | 8 | 5 | 3 | 3 | 2 | 3 | 4 | 0 | 0.2 | 0 |
| Montgomery | 172 | 187 | 193 | 154 | 123 | 9 | 25 | 10 | 6 | 99 |
| Prince George | 171 | 129 | 49 | 78 | 26 | 64 | 143 | 1 | 1 | 20 |
| Queen Anne | 9 | 6 | 12 | 1 | 9 | 5 | 0 | 0 | 0 | 0 |
| St. Mary | 27 | 30 | 14 | 27 | 7 | 0 | 12 | 1 | 0 | 0 |
| Somerset | 13 | 4 | 4 | 4 | 3 | 6 | 7 | 0 | 0.2 | 0 |
| Talbot | 9 | 5 | 6 | 3 | 5 | 4 | 4 | 0 | 0.3 | 0 |
| Washington | 41 | 38 | 0 | 36 | 0 | 3 | 41 | 0 | 0 | 0 |
| Wicomico | 22 | 9 | 20 | 4 | 12 | 17 | 5 | 0 | 0.5 | 0 |
| Worcester | 13 | 11 | 9 | 10 | 6 | 2 | 4 | 0 | 0.3 | 0 |
| Baltimore City | 153 | 97 | 1 | 35 | 1 | 83 | 176 | 3 | 0 | 0 |
| 주총계 | 1186 | 1048 | 581 | 738 | 325 | 287 | 778 | 33 | 24.8 | 183 |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미국 메리랜드주 교육청의 미디어 프로그램, 전문직 자격 기준, 그리고 자료 및 전문직·보조직 현황을 살펴보았다. 가장 큰 특징은 첫째, 학교 도서관 정책이 교육청에 의해 계획되어 지도·감독하고 둘째, 도서관 매체 전문직 즉, 사서 교사의 자격 구분을 통하여 계속적인 재교육과 자격 갱신을 의무화하고 셋째, 주 교육청과 학교에 학교도서관 매체책을 설치하여 학교도서관 매체 장학관(사)을 두고 각급 학교의 학교도서관 미디어 센터를 지도·감독하고 넷째, 학구의 도서관 매체 행정 사항으로서 사서교사 배치와 자료, 시설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도서관 매체 전문직(사서 교사)의 위상에 있어서 분류·목록등 자료의 조직·관리보다는 교육 매체에 관한 지식과 능력 구비를 주요교육청 중점 분야로서 의무화하여 채택하고 있다. 또한 사서 교사의 독서 교육에 관한 지식과 능력 구비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교육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도서관의 정상화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달성하는 필수적인 측면이라는 점을 교육 당국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서관계는 학교 교육이 변화하는 현재와 앞으로의 흐름에 따라 도서관계에서조차 등한시해 온 학교도

서관과 사서교사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연구와 노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필자는 수년간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분류·목록 등 자료의 조직과 관리만으로 학교도서관의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서 다루어지고 보다 직접적인 교육적 역할을 수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실적으로 학교도서관 분과위의 역할은 강조되어야 한다. 분과위는 학술·연구기능, 학교도서관과의 발전 협의 기능, 대학과의 학교도서관 발전 협의 기능, 교육 행정 기관과의 학교도서관 발전 협의 기능, 그리고 외국 학교도서관 협의회와의 협력·교류 기능 등을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필자가 지난해 여름 미국 학교도서관의 현실과 발전 방향을 살펴 보기 위하여 미국 동부 지역을 시찰하면서 미국 학교도서관이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궁극적으로 많은 도서관 관계자들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발전 노력과 연구, 그리고 변화하고자 하는 자세에 기인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우리 나라의 학교도서관도 미디어 프로그램과 독서 교육의 이론을 수용하여 보다 확고한 학교도서관과 사서 교사의 위상을 정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모든 조직은 변화하지 않으면 쇠퇴하게 마련이며 이론의 변화 없는 현실의 변화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